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06호 2009. 11. 18.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187호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1
○ 정선군조례 제2188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정선군조례 제2189호 정선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4
○ 정선군조례 제2190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정선군조례 제2191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59호 정선군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 정선군규칙 제1160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59호 2009년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고시 ······ 4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715호 분묘개장공고(2차) ······ 45
○ 정선군공고 제2009-737호 2009년 10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46
○ 정선군공고 제2009-738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0
○ 정선군공고 제2009-742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3차 (수정) 공고 ······ 6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1. 18.

정선군조례 제2187호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대회
2. 교육훈련
3. 새마을 운동 우수 단체 및 유공자 포상
4.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새마을조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선군새마을회에서 일괄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주 요 내 용

○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지원신청은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1. 18.

정선군조례 제2188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 중 “대표이사를”을 각각 “부이사장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단서 중 “대표이사가”를 “부이사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로”를 “부이사장(이하 “부이사장”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대표이사로”를 “부이사장으로”로 한다.

개 정 이 유

○ 현재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부이사장”으로 개정함으로써,
○ 재단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문화마인드가 있는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은 물론 정선아리랑 진흥 및 가치제고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명칭 개정(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1. 18.

정선군조례 제2189호

정선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지역의 노사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사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선군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군 단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군 단위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정선군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의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 지역 내의 노사정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의 협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협의회의 안건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안 제1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1. 18.

정선군조례 제2190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기업"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본사 또는 공장"을 "본사·공장 또는 공장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2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선군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50만원"을 각각 "60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도권지역 등에서 기업 및 연구소 이전에 대한 지원)”을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으로, “집단화하는” 을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 이전기업 보조금은「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고용보조금”을 “고용보조금의 일부”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4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에 의거 지원되는 보조금의 국·도·군비예산 재원부담비율과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규정인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주 요 내 용

○ 상시고용인원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5항)

○ 이전기업보조금 지급대상에 연구소를 포함(안 제11조제1항)

○ 임대료지원 제외 단서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지원금액 개정
(안 제13조제2호, 안 제14조제2호)

○ 국고지원 지방기업에 대한 정의, 지원규정개정 및 신청서 명시
(안 제2조제7항, 안 제20조의3)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1. 18.

정선군조례 제2191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이하를 말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축 또는 개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4"를 "법 제8조"로, "법 제48조, 제51조 및 제 53조"를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5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51조 및 제53조"를 "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법 제8조의3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법 제8조의3제4항"을 "법 제13

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72조”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를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4호”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5. 기타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정선군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효력상실, 업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동일 허가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의 80퍼센트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일 경우에는 산출되는 수수료의 40퍼센트로 하고, 최종 사용승인 시 4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26조"를 "법 제35조"로, "법 제28조"를 "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법 제50조"를 "법 제58조"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을 "건축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3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이하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3조"를 "영 제27조의2제2항"으로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의 합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3조제3항"을 "영 제2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수대"를 "식수대. 다만, 허가권자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3조제4항"을 "영 제27조의2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5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4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69조의2제1항"을 "법 제80조제1항"으로,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9조의2제4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	대행수수료 산정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1시간
2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2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 5,000제곱미터 미만	3시간
5,000제곱미터 이상 ~ 10,000제곱미터 미만	4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 30,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30,000제곱미터 이상 ~ 100,000제곱미터 미만	8시간
100,000제곱미터 이상 ~ 300,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300,000제곱미터 이상	12시간

※ 대행수수료 =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소요시간×현장조사시 비율

1. 기술사 노임단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단가를 말하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현장조사시 비율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수수료 산정예시)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고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없음)을 위한 업무대행인 경우
- 2009년 기술사노임단가 296,530원 (1일)
- 296,530원 / 8시간 = 37,066원 (1시간당)

※ 대행수수료 = 37,066원 × 4시간 × 80퍼센트 = 118,611원 = 118,000원 (천원미만 절사)

개 정 이 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을 140/100으로 완화(안 제4조제3항)

○ 기존건축물에 의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안 제5조제2항)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명확히 규정(안 제7조제1항)

○ 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조례로 명시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방법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안제10조제1항)

○ 맞벽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맞벽건축물의 층수를 규정(안 제39조제2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수평거리의 2배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면시설 설치대상 거리인 2m로 규정 완화(안 제41조제4항)

정선군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1. 18.

정선군규칙 제1159호

정선군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반운영규칙"을 "정선군 반운영규칙"으로 한다.

별표의 명칭란 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북면"을 "여량면"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임계면 명칭란 및 구역란 중 "골지 1리"를 "문래 1리"로, "골지 2리"를 "문래 2리"로, "골지 3리"를 "문래 3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읍·면사무소란 및 직위란 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 "여량면"으로 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함

주 요 내 용

○ 별표 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북면"을 "여량면"으로 하고, "골지리"를 "문래리"로 개정함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9. 11. 18.

정선군규칙 제1160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지매입보조금)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부지매입보조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을 상한으로 한다.

②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대료 지원) ①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초지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대료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을"을 "상시고용인원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장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장시설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시설보조금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7호서식"을 "운임 및 요금과 관련 처음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고지원 이전기업 보조금) 조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조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제15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11조부터 제20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본사면적(㎡)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건축비 등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장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사업개시일

이전前	공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천원)

구 분	신규공장시설	기존 공장이전시설		
	투자금액	취득금액①	감가상각누계액②	공장시설가액 (③=①-②)
계				
건 축 물				
시설장비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전 소재지				
이전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원/제곱미터)			
	임대면적 : 제곱미터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대 표 자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등 이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table>
<tr><td rowspan="4">지원대상</td><td>지방이전기업</td><td colspan="3"></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3"></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법인 본사
소재지</td><td colspan="3" rowspan="2"></td><td colspan="2">전 화</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팩 스</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입 주 유 형</td><td colspan="7">☐ 분양(매입) ☐ 임 대</td></tr>
<tr><td colspan="2">입 지 유 형</td><td colspan="7">☐ 산업단지 ☐ 개별입지</td></tr>
<tr><td colspan="2">이 전 부 문</td><td colspan="7">☐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td></tr>
<tr><td colspan="2">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td><td colspan="3"></td><td colspan="2">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td><td colspan="3">천원</td><td colspan="2">분양가 또는
임대료(원/㎡)</td><td colspan="2">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td><td>총면적</td><td colspan="2">공장용지</td><td colspan="2">건축면적</td><td colspan="2">기준공장면적률(%)</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td><td></td><td>착공(예정)일</td><td colspan="2"></td><td>설립완료(예정)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업 종
(표준산업 분류번호)</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이전기업투자금액</td><td colspan="4">천원</td><td colspan="2">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td><td>명
명</td></tr>
<tr><td colspan="2">보조금 신청액</td><td colspan="7">천원</td></tr>
<tr><td colspan="2">지자체 분담금</td><td colspan="7">천원</td></tr>
</table>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취득세, 등록세)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5호서식】

<table>
<tr><th colspan="6">고용보조금 신청서</th></tr>
<tr><td rowspan="3">신청인</td><td>회 사 명</td><td></td><td>전 화
(팩 스)</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td><td></td><td>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td><td></td><td>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td><td colspan="2"></td></tr>
<tr><td>공장소재지</td><td colspan="2"></td><td>업 종
(분류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 colspan="2">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td><td>총면적</td><td>공장용지</td><td>건축면적</td><td>사업개시일</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이전前</td><td colspan="2">소 재 지</td><td>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td><td colspan="2">업 종
(분류번호)</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 colspan="2">상시고용인원
(명)</td><td>총 인 원</td><td>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td><td colspan="2">기존 고용인원</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보조금 신청액(천원) :</td></tr>
<tr><td colspan="6">「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6">※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td></tr>
</table>

【별지 제6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이전前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 종 (분류번호)

상시고용인원 (명)	총 인 원	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	기존 고용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인원(명)	
교육훈련내용		소요금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table>
<tr><td rowspan="4">지원대상</td><td>지방이전기업</td><td colspan="3"></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3"></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법인 본사 소재지</td><td rowspan="2" colspan="3"></td><td colspan="2">전 화</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팩 스</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입 주 유 형</td><td colspan="7">□ 분양(매입) □ 임 대</td></tr>
<tr><td colspan="2">입 지 유 형</td><td colspan="7">□ 산업단지 □ 개별입지</td></tr>
<tr><td colspan="2">이 전 부 문</td><td colspan="7">□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td></tr>
<tr><td colspan="2">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td><td colspan="3"></td><td colspan="2">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td><td colspan="3">천원</td><td colspan="2">분양가 또는
임대료(원/㎡)</td><td colspan="2">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td><td>총면적</td><td colspan="2">공장용지</td><td colspan="2">건축면적</td><td colspan="2">기준공장면적률(%)</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td><td></td><td>착공(예정)일</td><td colspan="2"></td><td>설립완료(예정)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업 종
(표준산업 분류번호)</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이전기업투자금액
(ⓐ+ⓑ+ⓒ)</td><td colspan="4">원</td><td>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td><td colspan="2">명
명</td></tr>
<tr><td>건축비(ⓐ)</td><td colspan="2">천원</td><td>시설장비
구입비(ⓑ)</td><td colspan="2">천원</td><td>기반시설
설치비(ⓒ)</td><td colspan="2">천원</td></tr>
<tr><td colspan="2">보조금 신청액</td><td colspan="7">천원</td></tr>
<tr><td colspan="2">지자체 분담금</td><td colspan="7">천원</td></tr>
</table>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8호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업 종 (분류번호)
이전前			

상시고용인원 (명)	총 인 원	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	기존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운송약관 1부
2. 운송장비 등 운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회 사 명</td><td colspan="3"></td><td>전 화
(팩 스)</td><td></td></tr>
<tr><td>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d>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td><td colspan="3"></td><td>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td><td></td></tr>
<tr><td colspan="2">공장소재지</td><td colspan="3"></td><td>업 종
(분류번호)</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td><td>총면적</td><td colspan="2">공장용지</td><td>건축면적</td><td>사업개시일</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임 대 료</td><td colspan="5">원</td></tr>
<tr><td colspan="2">공장시설 투자금액</td><td colspan="2">천원</td><td colspan="2">보조사업 담보방법</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상시고용인원
(명)</td><td colspan="2">총 인 원</td><td colspan="2">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td><td>기존 고용인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7">보조금 신청액(천원) :</td></tr>
</table>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11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정선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자액(천원) :
- 투 자 목 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①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 )	업종(분류번호)	
	자산규모		신규투자규모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지원대상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수급여부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낙후지역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조금	총금액: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3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제1항 내지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신규상시고용인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함)
3. 신규투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및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별지 제1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상시고용 인원수	신규고용 인원수	자산규모	신규투자규모

2.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3. 신규투자내역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　건	투자목적 기율
		............생산시설	........에 소요되는 시설
합계			

4. 신규채용내역

연번	성명	채용일자	근로분야
1			
2			

5. 향후 사업계획

【별지 제14호서식】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재정자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정자금 신청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신규고용 인원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1				
2				
3				
.				
.				
.				
.				
.				
.				

[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별지 제16호서식】

지방기업 관리대장

<table>
<tr><td rowspan="6">①
지방기업</td><td>상호(대표자명)</td><td colspan="4"></td></tr>
<tr><td>주소 및 위치</td><td colspan="4"></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4">전화 : / 팩스 :</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신고일</td><td></td></tr>
<tr><td>지방기업
투자금액</td><td colspan="2">천원</td><td>고용규모</td><td></td></tr>
<tr><td>업종(분류번호)</td><td colspan="2"></td><td>주요 생산품 및 활동</td><td></td></tr>
<tr><td rowspan="2">예산
지원액</td><td rowspan="2">고용보조</td><td colspan="4">대상인원 : 명</td></tr>
<tr><td colspan="2">총금액 : 명</td><td colspan="2">국비: 도비: 시군비:</td></tr>
</table>

<table>
<tr><td rowspan="8">②
점검
사항</td><td>점검 년월일</td><td>이행 여부 및 관련서류 확보</td><td>변동사항</td></tr>
<tr><td>. . .</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작성요령]

① 지방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점검사항은 지방기업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예: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 등에 대한 점검을 기록하고 지방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table>
<tr><td rowspan="6">①
지방이전
기업</td><td colspan="2">상호(대표자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소 및 위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연락처</td><td colspan="3">전화 : / 팩스 :</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신고일</td><td></td></tr>
<tr><td colspan="2">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td><td></td><td>고용규모</td><td></td></tr>
<tr><td colspan="2">업종(분류번호)</td><td></td><td>주요 생산품 및 활동</td><td></td></tr>
<tr><td rowspan="12">예산
지원액</td><td rowspan="4">산업
단지</td><td rowspan="2">임대료
감면보조</td><td>총금액:</td><td colspan="2">국비: 도비: 시군비:</td></tr>
<tr><td colspan="3">면 적:</td></tr>
<tr><td rowspan="2">분양가
차액보조</td><td>총금액:</td><td colspan="2">국비: 도비: 시군비:</td></tr>
<tr><td>면 적:</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개별
입지</td><td rowspan="2">임대료
감면보조</td><td>총금액:</td><td colspan="2">국비: 도비: 시군비:</td></tr>
<tr><td colspan="3">면 적:</td></tr>
<tr><td rowspan="2">매입가
차액보조</td><td>총금액:</td><td colspan="2">국비: 도비: 시군비:</td></tr>
<tr><td>면 적:</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고용보조</td><td colspan="3">대상인원:</td></tr>
<tr><td>총금액:</td><td colspan="2">국비: 도비: 시군비:</td></tr>
<tr><td colspan="2" rowspan="2">교육훈련보조</td><td colspan="3">대상인원:</td></tr>
<tr><td>총금액:</td><td colspan="2">국비: 도비: 시군비:</td></tr>
<tr><td>②
특이
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별지 제18호서식】

국내외투자기업 관리대장

(관리번호 : 정선군-　　　　　)

(단위 : 천원, ㎡)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 락 처		전화 : 033)	팩스 : 033)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일	
	투 자 금 액			고용규모	명
	업 종 (분류번호)		(　　　)	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 산 지원액	계획 입지 □산업 □농공	임대료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분양가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개별 입지	임대료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매입가 보 조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면 적 :		
	투자 보조	본사이전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공장이전	총금액 :	국비: 도비: 군비:	
	고용촉진보조		대상인원 : 명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교육훈련보조		대상인원 : 명		
			총금액:	국비: 도비: 군비:	
특이 사항					

【별지 제19호서식】

포상금지급 신청서

포 상 금 신 청 인 인적사항	주소(소재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HP)		
투자유치 내 역	투자가		국적	
	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 종			
	종업원수			
	입주유형	□ 신설	□ 증설	
	투지유형	□ 단독	□ 합작(%)	
	총투자비			
	시설투자액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1. 투자가의 사업계획서 1부
   -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2. 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3.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체결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외자도입증명서(외자도입에 한함)
   - 외환매입증명 및 주금 납입증명(수탁은행)
5.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0호서식】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정선군수 귀하

본인은 귀 군을 비롯한 사업성평가 업무를 의뢰하는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거래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용역의뢰 및 신용정보활용 동의서

정선군수 귀하

당사가 귀 군에 기업설립 및 투자를 신청함에 있어 당사의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성평가 업무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자료제출등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군을 비롯한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 당사 또는 당사의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상황 등의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보고서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성 명 :

개 정 이 유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4호, 239호로 지방이전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고,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주 요 내 용

○ 임대료 지원 신청서식 및 지원기간 명시(안 제3조의2)
  -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고 최대5년간 지원

○ 물류보조금 신청기간 명시(안 제7조)
  - 운임 및 요금과 관련 처음 체결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국고지원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신청서식 명시(안 제7조의2)
  - 부지매입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 국고지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식 명시(안 제7조의3)

정선군고시 제2009-159호

2009년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고시

2009년도 지방세(군세)지출 실적(2008년 결산 및 2009년 추계)을 재정공시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군세(郡稅) 비과세·감면내역과 규모를 알리고 나아가 지방재정 건실화 도모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09.
정 선 군 수

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개요

○ 지방세 지출예산의 개념 :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인 비과세·감면·공제 등 원칙적으로 내야하지만 정책적 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함.

※ ①감면 :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경감세금
②비과세 : 지방세법에 의거 원칙상 부과해야 하나 정책상 받지 않는 세금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 지방세 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일반적인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

나. 지방세 지출예산의 대상 :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에 한함.

다. 지방세 지출실적(2008 결산, 2009 추계)

1) 2008년 우리군 지방세 지출실적은 3,941,142천원으로서
○ 2008년 군세 총 부과액 30,809,701천원 대비 12.79%
○ 2008년 군세 총 징수액 30,180,568천원 대비 13.06%.

2) 2009년 우리군 지방세지출 추계액은 4,508,156천원으로서
○ 2009년 군세 총 부과 전망액 30,096,088천원의 14.97%
○ 2009년 군세 총 징수 전망액 29,193,205천원의 15.44%

라. 2008년도 지방세 지출예산 세부 내역 : '홈페이지 참조'

마. 기 타 :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560-2282, 담당자 : 최광식)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715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수	비고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32-4	전	1	

2. 개장사유 :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진입도로 구간 편입
3. 개장방법
   o.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o.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o.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o.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330)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09. 11. 03.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737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대형건설 등 608명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등 608개소

○ 서류의 명칭 : **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사업소세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 2009년 10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9년 10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9년 12월 7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9. 11. 09.

정 선 군 수

2009년 10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세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면허세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형건설	2009소하천(기우천)정비공사(2공구)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한마음인터내셔널	직전리산270-2번지외5필지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씨에스상사	씨에스상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정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정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박종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종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홍윤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윤성)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기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기백)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수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수정)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찬오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찬오)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은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은용)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상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상봉)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임상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상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허옥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옥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안성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성준)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재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재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영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덕)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종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종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유은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은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최금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금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강호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호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박효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효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박미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미숙)	이사감
주민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소사동	손현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손현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홍옥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옥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돌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돌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권성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성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명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기복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기복)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혜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혜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유명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명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변용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변용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성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성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남진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진성)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홍선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선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안나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나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황병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병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승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승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상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상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윤영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영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윤영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영수)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안금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금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은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은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오미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미영)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기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기수)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진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선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선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한창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창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지명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지명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유영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영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미령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미령)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유미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미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최영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최옥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옥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손창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손창덕)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황종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종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재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재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오강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강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중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중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조용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용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옥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옥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기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기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순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순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윤상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상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조원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원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박정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정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임병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병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유옥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옥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계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계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재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재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구성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구성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배고종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고종)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대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대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순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순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연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연숙)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조성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성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귀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귀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박금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금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남창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창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장병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병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최태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태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원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원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강용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용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건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건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제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제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재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재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최창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창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우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우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권윤섭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윤섭)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정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정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강기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기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홍정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정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어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어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춘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춘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권오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오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석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석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금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금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수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수창)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박승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승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승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승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희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희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신진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진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진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용)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양병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병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원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원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신상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상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희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희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태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태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관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관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경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경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전찬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찬욱)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유화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화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백금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금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동	조옥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옥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주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주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종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한남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남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왕대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왕대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오준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준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홍미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미경)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길성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길성대)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최재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재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남상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상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황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황용)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순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순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정수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수철)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정혜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혜란)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성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최경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경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황재윤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재윤)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정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정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윤명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명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서석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서석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송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송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형국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국)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신대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대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안종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종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태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태남)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최종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종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형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형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임병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병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허정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정대)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원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원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남용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용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백은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은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홍주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주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안영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영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순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금)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양광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광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용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용남)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홍수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수남)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한이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이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윤흥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흥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맹성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맹성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준종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준종)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현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현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권재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재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명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용)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임옥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옥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옥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옥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유재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재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민기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민기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금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금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상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상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민태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민태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차운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차운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정윤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윤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상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상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순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전제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제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석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석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송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송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최아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아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종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종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최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엄남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엄남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홍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홍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이언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언정)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봉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봉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손용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손용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최경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경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청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청)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최지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지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배영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영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형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성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성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영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영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영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덕)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양점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점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장영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영숙)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창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창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황정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정흠)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계홍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계홍)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전은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은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지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지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보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보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경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경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홍만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만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유복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복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황영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영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춘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춘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한성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성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윤용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용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정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정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종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선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선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엄준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엄준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수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수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성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성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종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재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재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장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장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신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신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진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진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영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진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혁)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건실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건실)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상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상철)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나충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나충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오삼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삼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광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광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미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미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유종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종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영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만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만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조성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성봉)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서종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서종면)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최승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승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영복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복)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명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일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일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길동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길동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오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오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최규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규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희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희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권금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금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구복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구복)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애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애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상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상수)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양춘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춘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노승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노승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일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일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탁광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탁광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양희병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희병)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순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순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장윤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윤정)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세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세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성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성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재홍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재홍)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희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희숙)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상묵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상묵)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호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호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영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장상중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상중)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유상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상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창훈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창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신민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민경)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윤정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정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대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대영)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정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정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옥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옥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윤선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선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기풍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기풍)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최원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원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경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경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경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경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홍미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미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명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명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장진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진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윤병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병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권규섭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규섭)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순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순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순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원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원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상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상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우동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우동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한철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철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연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연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진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남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남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임경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경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용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용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탁영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탁영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민창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민창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두광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두광)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양인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인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	김영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순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홍상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상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경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경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경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경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안대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대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필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하필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종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종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학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학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성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성모)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배영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영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금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금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정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정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황용복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용복)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심효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심효정)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	탁성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탁성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성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성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덕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덕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신현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현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최현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현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세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세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성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성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조형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형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장기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기봉)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남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남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조복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복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학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학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용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용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임영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영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조인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인래)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영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민창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민창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철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철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송기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송기락)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신현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현욱)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한숙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숙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양만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양만휴)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안봉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봉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계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계영)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석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석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미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미영)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차영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차영희)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이상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상경)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정상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상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석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석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이종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종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현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현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홍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홍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삼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삼봉)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박명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명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을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을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덕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덕량)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봉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봉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유연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연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강대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대성)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권혁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혁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최병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병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이맹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맹열)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권기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기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엄재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엄재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안재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재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원옥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원옥봉)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변상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변상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박옥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옥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지상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지상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엄창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엄창용)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유권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유권)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이광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광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정해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해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선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선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허기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기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박재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재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현명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현명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영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남)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유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유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배준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준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신수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수남)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박춘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춘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한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한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형중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중)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허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정태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태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최의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의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윤요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요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현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현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순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순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안성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성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종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김병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병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현봉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현봉학)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손효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손효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윤금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금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사만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사만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고재봉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재봉)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홍성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성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홍혁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혁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조성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성옥)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함옥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함옥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춘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춘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고석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석준)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최영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암)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김승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승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박선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선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철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문철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권순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순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이재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재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조혜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혜경)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사만용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사만용)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장원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원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박장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장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임순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순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안영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영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윤덕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덕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신승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승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이진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진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이미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미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김정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정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김옥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옥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유진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진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전명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명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김영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김태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태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이광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광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석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석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손복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손복남)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김동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동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김동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동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이아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아롱)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김진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김준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준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김영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최해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해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박용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용진)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노삼국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노삼국)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정영중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영중)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김부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부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윤덕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덕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지경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지경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김영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정상곤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상곤)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최정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정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김연섭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연섭)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유병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병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유동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동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유동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동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이장열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장열)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남기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기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전미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미라)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이상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상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전희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희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장옥희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옥희)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최승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승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최진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진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최윤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윤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임상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상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전제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제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조강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강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정일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일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김홍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홍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유우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우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이선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선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김혜숙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혜숙)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남옥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옥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송희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송희남)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김진명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명)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임은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은자)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전경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경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박명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명식)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이기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기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최성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성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우미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우미정)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남윤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윤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이성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성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박진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진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이효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효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김근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근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주영경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주영경)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최근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근영)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윤성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성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박순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순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최천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천수)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이은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은춘)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황삼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삼례)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남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남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동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동철)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산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산옥)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지영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지영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정연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연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차경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차경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최복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복순)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성락관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성락관)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조휘정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휘정)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형식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식)	이사감
주민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송기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송기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종성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성)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지경수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지경수)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신대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대철)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이학영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학영)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배성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성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최상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상철)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한석문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석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오재원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재원)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박여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여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임정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정연)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영년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영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정영민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영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이정옥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정옥)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강희섭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희섭)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정옥선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옥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정남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정남)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신한연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한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재천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재천)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진범	2009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범)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영덕	2009년 개인사업장할 (그린중기)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오길	2009년 개인사업장할 (베스트빈)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옥자	2009년 개인사업장할 (사북야채)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옥순	2009년 개인사업장할 (좋은날)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나래건설	2009년 법인균등할 (나래건설 (주))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봉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김순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소,거소, 영업소불명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영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령인없음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나충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성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령인없음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송광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유은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령인없음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윤삼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령인없음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유니온	2009년05월귀속(주식회사 유니온) : 근로소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종합레저 타운	2009년05월귀속(주식회사함백종합레저 타운) : 사업소득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종합레저 타운	2009년04월귀속(주식회사함백종합레저 타운) : 근로소득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이근영	정선읍 봉양리 335-4 1동 외 1건 (면적 227.4㎡)	수령인없음
재산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박형기	정선읍 가수리 산 61 2호 외 3건 (면적 256,03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김선자	정선읍 덕우리 산 30 (면적 19,83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강종무	정선읍 덕우리 24 7호 외 19건 (면적 14,739.6㎡)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최배근	정선읍 귤암리 산 122 (면적 14,47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강기선	정선읍 회동리 784 외 12건 (면적 23,009.8㎡)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최순옥	정선읍 북실리 731-11 외 1건 (면적 66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김수경	정선읍 용탄리 1374 (면적 1,32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손철원	정선읍 회동리 733 외 1건 (면적 3,33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박근현	정선읍 광하리 산 31-2 1호 외 10건 (면적 27,207.6㎡)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최종관	정선읍 여탄리 192 4호 (면적 221.4㎡)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이영상	정선읍 용탄리 1134-3 (면적 88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박정아	정선읍 귤암리 57 3호 외 13건 (면적 1,931.6㎡)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이선희	정선읍 여탄리 산 83-1 (면적 44,46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중문주택건설	고한읍 고한리 145 1동 (면적 12,679.0㎡)	주소,거소,영 업소불명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명식	고한읍 고한리 산 40 (면적 12,39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김순자	고한읍 고한리 63-8 외 2건 (면적 .0㎡)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김남태	고한읍 고한리 124-137 3호 (면적 .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조남수	고한읍 고한리 106-6 외 4건 (면적 846.7㎡)	주소,거소,영업소불명
재산세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김영찬	고한읍 고한리 127-2 (면적 1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보은건설	사북읍 사북리 229-3 5동 102호 외 4건 (면적 212.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하이랜드	사북읍 사북리 462-14 1호 외 79건 (면적 39,467.8㎡)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최명자	사북읍 사북리 164-2 외 2건 (면적 1,458.0㎡)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원식	사북읍 사북리 317-162 1호 외 1건 (면적 107.0㎡)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영숙	사북읍 사북리 369-52 1동 1호 외 1건 (면적 29.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임귀화	사북읍 사북리 산 78 6호 (면적 11,64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영자	사북읍 사북리 369-54 1동 101호 외 1건 (면적 146.0㎡)	수령인없음
재산세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영운동	김상구	사북읍 사북리 산 87-2 4호 외 6건 (면적 38,37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권일영	사북읍 사북리 317-29 1동 102호 (면적 49.2㎡)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고태순	사북읍 직전리 251 외 2건 (면적 34,8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영농조합법인농촌	신동읍 예미리 122-8 외 3건 (면적 991.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정발산동	정남진	신동읍 조동리 산 19-3 10호 (면적 1,65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인정	신동읍 고성리 산 295 (면적 102,34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노재상	신동읍 방제리 산 1-3 1호 외 1건 (면적 4,20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사동	김석현	신동읍 예미리 산 40 (면적 8,92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황규영	신동읍 덕천리 317-14 외 1건 (면적 914.3㎡)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태환	신동읍 조동리 497 17호 외 5건 (면적 4,85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김승열	신동읍 방제리 산 74-3 1호 (면적 21,48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김화선	신동읍 예미리 795-10 (면적 1,33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홍영자	신동읍 운치리 237 (면적 99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이성희	신동읍 고성리 257 (면적 1,08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이재희	신동읍 운치리 856 외 3건 (면적 5,49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강영순	남면 무릉리 615-49 1호 외 2건 (면적 45.8㎡)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박용자	남면 광덕리 산 90 1호 (면적 4,91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김정아	남면 무릉리 825-1 1호 외 10건 (면적 58,014.5㎡)	주소,거소,영업소불명
재산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정해숙	남면 유평리 산 400 (면적 85,88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백성철	남면 문곡리 523 (면적 89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김영태	남면 무릉리 592-6 3호 외 9건 (면적 451.3㎡)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박진규	남면 광덕리 266 외 1건 (면적 5,80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이한우	남면 무릉리 산 576 3호 외 1건 (면적 6,58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김승호	남면 무릉리 465-1 1호 외 1건 (면적 158.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배순연	남면 낙동리 6 외 2건 (면적 8,28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김혜영	남면 무릉리 465-1 2호 외 1건 (면적 157.8㎡)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김준호	남면 무릉리 465-1 3호 외 1건 (면적 158.3㎡)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오창길	북평면 숙암리 257 (면적 2,32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문현기	북평면 북평리 360 1호 외 1건 (면적 1,76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박종웅	북평면 남평리 1099-5 2호 (면적 884.2㎡)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유성균	북평면 남평리 1168-4 1호 (면적 997.9㎡)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전선옥	북평면 남평리 1184-6 2호 (면적 553.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강선호	임계면 송계리 908-4 외 2건 (면적 1,70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이상연	임계면 송계리 1183 외 2건 (면적 3,41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형진	화암면 백전리 417-2 (면적 38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문재관	화암면 석곡리 산 107 3호 외 2건 (면적 25,7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직산읍	김영자	화암면 화암리 423-12 (면적 30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김병옥	화암면 석곡리 산 324 (면적 16,86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전제원	화암면 화암리 235 외 1건 (면적 3,11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전용호	화암면 건천리 산 262 (면적 13,98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김대동	화암면 석곡리 산 107 1호 외 2건 (면적 25,7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채국화	화암면 석곡리 산 313-2 2호 (면적 30,247.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정지원	화암면 화암리 952-3 (면적 1,85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윤영수	화암면 화암리 산 414 외 13건 (면적 133,562.8㎡)	수령인없음
재산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최인수	화암면 화암리 249-8 (면적 55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성원	화암면 백전리 산 206-1 1호 외 1건 (면적 19,487.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지곡동	김주율	화암면 호촌리 산 140 (면적 64,46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김성진	화암면 호촌리 239 3동 (면적 2,48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이진명	화암면 화암리 산 34-2 5호 외 9건 (면적 30,806.5㎡)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서석주	화암면 백전리 44-2 2호 (면적 5,65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서석주	화암면 백전리 산 475 (면적 76,66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박용기	여량면 유천리 641 외 2건 (면적 4,903.0㎡)	이사감
재산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백운범	여량면 여량리 747-1 (면적 7,05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이용호	여량면 구절리 산 102 (면적 16,86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신한연	여량면 고양리 298-2 (면적 7,44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박순옥	여량면 봉정리 248 1호 (면적 1,25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강릉시 교동	오도섭	여량면 유천리 산 153 외 13건 (면적 54,0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장봉화	여량면 구절리 312-2 4호 (면적 658.4㎡)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김서향	여량면 여량리 689-3 (면적 33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강원산업개발	고한읍 고한리 373-25 1동 1104호 [2기분]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최명자	사북읍 사북리 368-16[2기분]	이사감
재산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나무와나무	사북읍 사북리 219-39[2기분]	수령인없음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순녀	강원28노3861(비영업용,배기량:1498) [차령경감율:50%]	수취인미거주
사업소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오길	2009년 재산할(베스트빈)	수취인미거주
사업소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코스피아	2009년 재산할(주식회사코스피아)	수취인미거주
사업소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이재영	2009년 재산할(펜션텔)	주소,거소,영업소불명

정선군공고 제2009-738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0.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 및 우수학생 유치전략으로 우리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다음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560-2185, 팩스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 임 :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742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3차 (수정)공고

우리군 소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제1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 활용방안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코자 합니다. 공모하여 주신 우수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시는 모든분(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정선군 공고 제2009-710호(2009. 11. 2)로 고시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3차 공고에 대하여 특전 및 재산권 협의 삭제등에 따라 수정 공고합니다.

2009. 11. 12.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09. 11. 12. ~ 2009. 12. 30.

2. 제안자격 :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등

3.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가. 시설현황

- 부지 : 북평리 332-1번지 일원 59,113㎡
- 건물 : 본관 및 학습관외 6동 7,834.4㎡

나. 공모방법 : 자유제안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방안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3)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용방안

4. 응모방법 : 방문상담, 우편 등

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설명자료(PPT) 1부.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나. 접　　수
(1) 방　　문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2) 우　　편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제안담당자 앞(☎033-560-2432, 2240)

5. 공모심사
가. 심사기준
1) 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 년차별 투자계획
2)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신뢰성
- 사업관리능력
- 시설운영계획
3)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자기자본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4) 지역경제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계획
나. 심사방법
(1)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심사
(2)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평가
다. 결과통보 : 심의 확정후 확정된 안 통보

6. 확정된 안에 대한 재산활용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등

7.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공모된 공모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현황 및 평가항목 및 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